

의안번호	2204050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 11. 11.
추계번호	24D38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안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보상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6,500만원, 2030년 7억 6,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8억 2,500만원(연평균 7억 6,5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피해보상협의체 설치·운영 (안 제66조의4 신설)	765	765	765	765	765	3,825	765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피해보상협의체 설치·운영(안 제66조의4 신설)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17건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피해보상협의체를 설치하여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사회재난 발생 건수와 피해자 요청에 따른 피해보상협의체 구성 여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6조의4 (피해보상협의체 설치·운영)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피해자 등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피해보상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재량규정
2	안 제66조의6 제2항(배상금의 지급 등)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6조의4(피해보상협의체 설치·운영) 신설	○	-
2	안 제66조의6제2항(배상금의 지급 등) 신설	X	국가 등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는 사회재난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위변제 건수, 평균 손해배상금,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¹⁾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보상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추계
 -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²⁾ 등을 말함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17건의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인 행정안전부의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현황을 활용하여 추계
 -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3~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사회재난 건수는 17건
 -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경우,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간담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에 근거하여 피해자보상협의체 설치·운영에 따라 전문가를 포함한 보상심의위원회, 피해자 등을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를 말함

□ 본 추계에서는 매년 17건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사회재난 1건당 협의체 운영비용을 곱하여 산출

- (사회재난 건수) 추계기간 동안 사회재난 건수는 매년 17건으로 추정
 -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3~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사회재난 건수는 17건
- (협의체 운영비용) 추계기간 동안 매년 4,500만원으로 추정
 - 유사사례에 근거하여 피해자보상협의체 설치·운영에 따라 전문가를 포함한 보상심의위원회, 피해자 등을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회의참석수당 등을 곱하여 산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다른 협의체를 최대 1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보상심의위원회는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간 12회 개최하며 회의참석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25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매년 3,600만원(=12명×12회×2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간담회 운영비는 매년 900만원³⁾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협의체 운영비용은 연간 4,500만원(=3,600만원+900만원)으로 추정

□ 추계결과,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보상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6,500만원, 2030년 7억 6,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8억 2,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회재난 건수	17	17	17	17	17	-
협의체 운영비용	45	45	45	45	45	
추가재정소요(=a×b)	765	765	765	765	765	3,8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경우, 관계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등으로 2024년 기준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추계에서는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17건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피해보상협의체를 설치하여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사회재난 발생 건수와 피해자 요청에 따른 피해보상협의체 구성 여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